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1일, 이헌승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헌승의원)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이라 함)를 전송·게시하려는 자와 그 전송의 매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한 스팸 전송(이하 “불법스팸”이라 함)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전송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스팸을 전송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며,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제50조의10 신설 및 제75조의2 전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개정안에 따른 위반행위 중에는 그로 인해 의무자가 획득하는 이익이 경미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스팸 관련 의무위반 일체에 대해

여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과징금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각각의 위반행위로 획득한 이익이 정보통신망법상 타 위반행위로 획득한 이익에 비해 그 규모나 환수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 중 제50조의4 제4항¹⁾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태하여야 과징금 부과 가능한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1)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